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길버트와 테렐 분석틀의 적용과 활성화 방안

정지영, 정호진\*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 The Proposal and Analysis by Gilbert and Terrell on Supports for Creative Activities of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Jiyoung Jung, Hojin Jeong\*  
Department of Art, Hanse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된 2012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고찰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분석틀로써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측면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각각 분석의 결과를 도출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규정이 모호하며 다양한 급여의 형태와 전달체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재정 마련에 있어서도 국고이외에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확보의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예술인 지원대 상구분에 대한 연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재원확보 및 현실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 등과 같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예술인복지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활동, 창작활동지원, 문화지원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improvements to problems including investigation public affairs for the activities of artists focusing on th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since established in 2012. Hence, Gilbert and Terrell's analytical framework for social policy is used with these public affairs in terms of allocation, benefit, service delivery system and finance for this research and pointed at issue. As a result of analysis, the identification of artist is vague for the allocation and the benefit and delivery are not effective in actual practice. In addition to this, the source of fund should become independent financially not to depend on the public funding. Therefore, the follow-up research is necessary that the system of verification for the artists to benefit from the public supports with fair and effective opportunities and developments to secures the funds prospectively

**Key Words** : Welfare law on artists, Korean welfare foundation, Creative activities policy, Cultural support, Cultural policy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많은 예술인들은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극히 개

인적인 영역의 노동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 고용시장에서의 자리매김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예술인의 취업형태나 취업기간 등도 일정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 하에 직장가입자로서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드문

\*Corresponding Author : Hojin Jeong(2000081@hansei.ac.kr)

Received December 28, 2017

Accepted July 20, 2018

Revised June 29, 2018

Published July 28, 2018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들과 제안들은 계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다.

1981년 최초로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의료보험조합을 시작으로 1984년 영화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한 제도적 운영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술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2002년 한국문화예술인복지조합 설립을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다. 2003년 마침내 전국문화예술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2005년 연극인복지재단과 전국영화산업노조가 출범하였고 2007년 전국미술인노동조합과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자유직업 종사자인 예술인들이 사회적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만들고자 하였다.

정치권에서도 문화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문화예술인 복지조합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으며 2004년 대선에서 열린우리당은 4대보험 개선을 통한 예술인복지 증진, 한국예술인공제회 설립운영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2007년 민주노동당은 제17대 총선에서 문화예술인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한 법안 마련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예술인복지법안이 상정되었다. 다양한 공청회와 오랜 공론화 끝에 2011년 10월 「예술인복지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해 11월에 법으로 제정 되었다. 이 「예술인복지법」을 통해 예술인에 대한 법적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법안에 기초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을 통해 사회복지와 예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될 수 있게 되었다[1].

「예술인복지법」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예술인에 대한 정의와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통해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예술 영역에서 표준계약서 양식과 정확한 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정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및 보상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술인복지사업을 위해 한국예술복지재단을 설립을

명시하였다. 마침내 2012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예술인들의 사회보장 확대지원, 예술인들의 직업안정, 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원로 및 취약예술인 지원사업,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증진사업, 예술인 복지 및 근로실태조사, 공제사업 및 복지금고의 운영,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부 위탁사업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술인 복지 전반에 대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재단은 효율적인 지원은 예술인들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적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2].

그러나 「예술인복지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분야는 여전히 열악하고 불안정한 취업의 형태가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예술인들의 경제적 여건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므로 2012년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이후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 5주년을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을 위한 복지현황과 그 효율성을 점검하여 재단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예술인의 복지현황을 알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설립된 기간을 비교적 짧은 관개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지원현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예술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논문들과 예술분야별 복지정책의 연구들을 통해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예술인을 위한 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위해 관계법령과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예술인실태조사」 자료와 고용노동부의 「문화예술산업 근로실태 조사 및 근로자 보호방안」을 활용하였다.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산재보험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 종합안내」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주요 사

업들의 현황 및 효율성 그리고 개선점 등을 파악하고자 2012년부터 보고된 지원사업에 관련된 15개의 연구보고서, 각 사업별 성과사례집들과 예술인 복지 정책 토론회 자료집들, 그리고 언론자료 등을 고찰하였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내용과 현황 등을 도출하여 길버트와 테렐(Gilbert and Terrell)의 네 가지 분석틀인 할당, 재정, 급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향후 예술인을 위한 복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1.3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를 위해서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연구의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지원사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 분석틀은 경제적 시장 외부에서 기능하는 혜택할당제(Benefit-allocation mechanism)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다. 복지적 측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분기준으로 재정적 결핍이나 의존성, 사회적 동기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구분 기준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가 할당되는 것을 말한다.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은 네 가지 차원의 분석적 측면을 가지는데 우선, 사회복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할당(Allocation)차원의 급여대상인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급자격들을 들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사업 안에서의 수급대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로 급여(Benefit)의 형태로 현금이나 현물 등의 형태이 외에도 증서(Voucher), 기회(Opportunity)와 같은 것도 있는데 복지재단의 지원사업에서 급여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보하고자 한다. 셋째로 서비스 전달체계(Delivery)로 유효한 급여를 적절한 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달체계의 설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달체계에는 전체적인 구조, 전달 단위간의 연결, 지리적 위치, 그리고 담당 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선택하는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 분석적 측면은 재정(Finance)인데 여기에는 재정원천(the Source of Funds)에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 공적재원, 혹은 민간 재원 등의 비율과 정부의 개입정도 등이 있다[3].

Table 1. Analytical Frame of Gilbert and Terrell

Categories	the Work of the KAWF
Allocation	the Eligible for the benefit as a artist
Benefit	Type of benefit from KAWF
Delivery	Process of Application and Service for the artists
Finance	Fund Raising and administration and role of KAWF

Table 1은 본 연구를 위해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틀에 입각한 분석틀을 정리한 것이다. 할당은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수급에 대한 자격을 말하는데 재단의 사업에 따라 수혜자의 자격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급여는 예술인들을 위해 복지재단에서 제공되는 공식적인 급여의 형태를 살펴보고, 서비스 전달체제로 사업에 예술인들의 신청, 결정 등 일련의 과정들을 고찰하겠다. 마지막으로 재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재정의 상황 및 운영 등에 대해 주로 점검하고자 한다.

## 2. 예술인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

### 2.1 복지대상으로서의 예술인

복지의 수혜대상을 정함에 있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사회적 약자나 특별한 보호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4]. 예술인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대상으로서 예술인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을 정의 할 때 독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자격을 가지거나 일정한 기관에서 존재하는 직업군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는 예술인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지극히 자유롭고 창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예술이 대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관련 학위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창조적 성과물이나 가치관에 따라 예술인으로 활동도 하고, 나아가 스스로 예술인으로서 자부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적 정책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직업인으로서의 예술인에 대한 개념적 정의들이 있다. 우선, 유네스코의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 1조에서 예술인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독창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 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공인된 협회에 관계하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5,6].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을 규정함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법」 2조와 3조에 의해 12개 문화예술분야를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으로 분류하고 「예술인복지법」 따라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 곧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와 문화예술분야에 창작, 실연, 기술지원, 행정지원 등의 방식으로 참여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7]. 이렇게 규정된 예술인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과 문화산업 발전 그리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전문직업인으로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직종들을 볼 때 복지법안에서의 예술인을 정의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술인복지법」으로 인해 예술인을 전문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아울러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예술인 취업형태는 이러한 제도적 보장을 받기에 불안정한 고용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Table 2는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3년마다 시행되는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서 예술인들의 취업상태를 조사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자유직, 자영업, 정규 고용직과 임시 고용직으로 나누어 볼 때 법적, 제도적 보호아래 있는 직군인 정규고용직은 전체에서 29.4%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3년 단위로 조사한 보고서를 볼 때 자유전문직군이 2003년 30%에서 2015년 72.5%로 점점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고용의 형태로 인해 「예술인복지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조사는 겸업예술인과 전업예술인을 분류하였고 Table 2에서 2015년 최근 조사를 볼 때 복지가 필요한 예술인들은 주로 자유전문직군

(72.5%)으로 다른 직군들에 비해 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복지의 대상으로 예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8].

Table 2. Analytical Frame of Gilbert and Terrell

Questions of Survey	2003	2006	2009	2012	2015
self-employment	18.1%	13.4%	16.5%	16.2%	6.5%
professional free-lancer	30.0%	33.8%	26.4%	20.7%	72.5%
full-time job	29.4%	30.1%	22.9%	18.3%	6.4%
part-time job	14.7%	8.8%	10.4%	12.8%	9.8%
unemployed and retiree			13.9%	26.5%	
others				5.6%	

(Edited 2006-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이러한 현실 속에서 Table 3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위해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정부의 역할들을 조사한 것이다. 2003년부터 2012년의 조사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함에 있어 가장 절실한 것은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30%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술인들을 위한 법률이나 복지제도의 정비가 가장 필요하다는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9].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많은 예술인들은 예술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및 중대를 통한 창작활동의 경제적 지원과 법률 및 제도의 정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Survey of Artists for the Support

Questions of Survey	2003	2006	2009	2012
Financial support	31.1%	32.1%	33.5%	34.7%
Improvement of the Law and System	20.5%	25.0%	26.0%	24.8%
Professionalism of Public Administration	12.0%	11.6%	9.4%	10.9%
Enhanced Art Education Program	7.8%	5.9%	6.8%	5.6%
Expanding the Public Education for Art	7.3%	6.8%	5.0%	9.1%
Expanding the Government functions for the Art	6.5%	7.4%	5.6%	4.0%
Provide places for Creative Activities	5.0%	3.3%	4.2%	3.3%
Freedom for Creative Activity	3.9%	3.5%	4.3%	3.4%
Expanding the Traditional Culture	2.5%	2.8%	2.9%	3.4%
International Exchange with Other Culture	2.3%	1.1%	1.1%	0.9%
No Reply	1.0%	0.9%	1.3%	0.0%

(Edited 2006-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 3. 네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결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일정기간의 발표된 예술 활동 등을 증명하여 직업적인 예술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활동증명’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패스’는 예술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이나 활동기회가 적은 원로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창작활동에 대한 동기 고취와 창작안전망구축을 구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은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다양한 예술 직무영역을 개발하여 기업이나 기관에게 예술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차원의 복지사업이다. 그리고 예술인 산재보험 일부 지원 사업으로 월 납입보험료의 50%를 납부해 주는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예술인의 노후와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50%를 환급 및 지원하는 사업이다[10].

#### 3.1 할당을 위한 수급자격

모든 지원 사업에 있어서 신청을 위한 필수 자격요건은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명시한 예술인의 법적인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예술인이란 것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법령에 의거하여 신청자격을 규정 하는 것이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는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예술인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Table 4는 이러한 할당을 위한 자격을 정리한 것이다. 예술활동증명사업은 위의 예술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자신의 예술활동 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맞추어 제출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그러므로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수급의 자격은 법제화 되어 있으며 일정한 증빙서류들만 있으며 예술인으로서 공평하게 그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에서는 위의 법적인 근거아래 3개월 이상 예술활동이 증명된 성인이 지원받을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창작준비금이라는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일정한 신청의 제한을 둔다. 우선 만 19세 미만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예술인, 가구원 소득 합계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예술인,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150% 초과 예술인도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창작준비금이 절실한 예술인에게 우선 지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인패스 사업의 자격은 예술인 복지법에 의한 예술활동증명 받은 예술인, 혹은 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한 자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미술관, 박물관의 관장 또는 설립자로 예술관련 기관의 단체장에게도 예술인패스를 발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술인들의 개인적인 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기보다는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모든 예술인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가장 폭넓은 수혜자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인 파견사업은 기업이나 기관과 연계가 완료된 예술인으로 예술적 협업구조를 마련하고 프로젝트 기획·운영, 성과관리 등을 진행하는 예술인이나 프로젝트를 기획 및 운영을 하는 예술인을 그 자격으로 하고 있다. 매칭 기업이나 기관은 참여예술인들과 함께 예술적 협업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최소 월 10일로 3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이 사업에서는 이전의 법적인 예술인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는 예술인이나 관리인이 직접 기업이나 기관에 연계를 완료해야 한다는 자격을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통해 예술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역에서 새로운 직무를 만들게 할 수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이 된 자에 한하여 예술인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당해 연도 유효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 관련 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및 예술활동증명 완료자에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일부 지원해 주고 있다. 산재보험료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11].

Table 4. Type of Eligible Allocation on KAWF

Category	Eligible Allocation	
Proof of work of art	Artist by Enforcement of Artist Welfare Act	3 Months-long Career
Fund for Creative Support		Artists aged 19 and older and minimum-wage
Art Pass		Artists, Curator, Culture & Art Educator
Dispatch Artists		Artists, Facilitator, Company
Support Insurances		Artists employed temporary and minimum-wage

(Ed. 2015-2018 Information Book of Welfare by KAWF)

Table 4에서 보듯이 할당을 위한 자격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대체적으로 법적인 정의에 근거하거나 경제적 여건을 구체적으로 적용 및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술활동증명사업에 있어서 그 수혜자격을 보호성을 가진다. 예술인의 범위는 전업 혹은 겸업 예술인의 구분이 어렵고 또한 예술활동증명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그리고 활동하는 예술분야에 따라 증명의 규모나 횟수 등이 각각 다를 수 있다. 또한 예술활동의 질을 무시하고 그저 활동 횟수나 규모에만 의존하여 예술인 활동을 증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예술인의 예술적 재능, 활동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 고려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상자의 선정이 필요하다.

### 3.2 급여의 형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서 급여의 형태가 현금(Cash)이나 현물제공 그리고 증서(Voucher)나 기회(Opportunity)를 제공하는 등 급여의 형태가 다양하다. Table 5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사업들과 각 사업에 대한 급여형태를 정리한 것이다. 현금제공의 경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예술인파견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들에게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창작준비금은 선정된 예술인 1인에 한하여 1회 300만원이 지급되며, 예술인파견 지원사업에서는 파견예술인에게 월 120만원씩 6개월 동안, 퍼실리테이터에게는 월 120만원씩 8개월 동안 각각 지급된다[12]. 또한 예술인파견 지원사업은 현금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창업을 위한 기회라는 형태로 제공하기도 한다. 예술인패스사업은 공연 등 관람료의 할인혜택을, 그리고 산재보험과 사회보험은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의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예술

활동증명 사업은 적정한 예술인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급여의 형태로 주고 있다.

Table 5. Type of Benefit based on KAWF

Category	Type of Benefit
Proof of work of art	Voucher
Fund for Creative Support	Cash
Art Pass	Discount Benefit
Dispatch Artists	Opportunity and Cash
Support Insurances	Refund

(Ed. 2015-2018 Information Book of Welfare by KAWF)

Table 5에서 예술인들의 경제적 지원과 예술적 활동 그리고 창작의식을 고취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급여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 분야에 상관없이 일괄 현금 3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활동하는 예술분야에 따라 예술활동의 규모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창작지원 준비금의 산정이 모든 예술분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결국, 창작을 위한 지원금보다는 일회성의 생계적 지원금으로 전락될 수 있어서 진정한 창작활동 준비금으로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예술인의 창작의식 고취를 위해 현금지급이 필요하다면 진정한 창작준비금의 취지에 맞는 금액 산정과 지불 횟수 등이 책정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패스 사업은 예술인패스카드 발급을 통해 전국의 등록된 공연장, 박물관 등의 관람료를 할인을 해주는 혜택인데 단순히 할인혜택만으로 양질의 예술 활동을 관람하고 향유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다. 가령, 예술인패스사업에 등록된 음악공연들을 볼 때 할인 혜택이 있어도 예술인들이 실제 관람하기엔 여전히 가격이 부담이 되는 공연이 많았다. 또한 인지도가 높거나 대중성이 높은 경우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 있어 할인 혜택이 실질적으로 예술인이 공연을 관람으로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공연들의 비효율적인 할인혜택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나 선호도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예술인 복지 서비스를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13].

### 3.3 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전달체계는 사업별로 Table 6에서와 같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사업은 예술분야별로 최근 3

년 동안의 조건에 맞는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약 3-4주의 심의 기간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재단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등록 예술인들의 활동들을 관리하고 있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신청자에 한하여 심사를 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여 창작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예술인 패스 사업의 경우는 예술인패스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여 예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연, 전시들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인 파견사업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참여예술인들을 공모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활동을 돕고 있다[14].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을 대행하고, 보험료를 50%~90% 지원하고 있으며, 예술인의 노후와 안정적인 직업활동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 50%를 환급을 하고 있다.

Table 6. Type of Delivery based on KAWF

Category	Type of Delivery
Proof of work of art	Examination of Documents and Career
Fund for Creative Support	Examination of Applicants' Qualifications
Art Pass	Application and Giving Informations by Homepage
Dispatch Artists	Project Matching and Dispatching
Support Insurances	Acting and Insurance Refund According to their Level

(Ed. 2015-2018 Information Book of Welfare by KAWF)

예술인 증명사업에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예술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상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융복합 분야로써 새로운 예술 분야가 창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 지식이나 이해 없이 어떻게, 어디까지 예술활동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모호할 수 있다. 순수 예술과 과학이나 다른 분야가 복합된 장르나 형식의 경우 예술적 부분이 어느 정도의 비중일 때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과연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지도 점검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예술인 패스사업에서도 할인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제한적이고 할인율이 낮아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가령, 2017년 11월 현재 할인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공연들

171개 중 할인 혜택이 각각 달랐으며 특정 공연들 중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공연- 할인 혜택이 기존 30%가 아닌 10%인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아예 할인 혜택이 없는 공연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용을 잘 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예술인들이 자기의 분야별 꼭 가야할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선별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15].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는 사업이다. 이 제도에서 창작준비금을 수여자를 선정하는 심사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예술인들의 반발을 많다. 또한 지원금 신청이 2017년에는 1차로 2월 공고,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여 5월에 지원하였고, 2차로 5월 공고,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여 8월에 지원하였고, 1차에 1,930명 57억 9천 만 원, 2차에 1,377명 41억 3천1백만 원의 규모로 진행되었다. 이 지원에 대해 예술인들의 관심이 아주 높았지만 운영에 있어서 선정자를 정하는데 2-3주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공지를 해놓고 2개월이 넘는 심사 기간이 소요되어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금 선정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수 천명의 신청자가 몰리는 사업인데도 접수의 기간도 단 하루 7시간만은 허용하여 문제도 드러났다. 또한, 선착순이라는 기준이나 2017년에는 신청공고에서 제시한 '지원 인원 초과 시 최종 제출 접수순으로 선정될 예정'이라고 하는 규정 역시 설득력 있는 선정 근거라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줄 세우기식의 지원으로 선정된 자나 선정되지 못한 자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이며 예술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정과 심사기준의 제시, 효율적인 신청 및 접수의 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16].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의 관리에 있어서도 창작활동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어떠한 후속관리가 없다. 예술인들의 생계비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면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며 창작준비금이라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신청, 집행 그리고 결과를 관리하는 체계가 더 구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3.4 재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예술인 복지사업 지역협력과 사업체계 구축을 위해 예술인 복지전담기관으로서의 책임 있게 재정을 집행 및 운영 하도

록 하고 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공익사업적립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재정이 정부가 직접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Table 7은 2016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재원 현황이다. 국고보조금은 약 249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8천만 원의 공익사업적립금 그리고 3천6백만 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행수입, 기부금 등이 있으나 일시적인 재원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17].

Table 7. The Type of Finance of KAWF

the balance brought forward	4,214,356,563
National Subsidies	24,862,000,000
The rest of Public Utilities	80,000,000
The Fund of Korean Culture and Arts	36,300,000
vicarious income	8,602,500
donation	25,000,000
other incomes	204,762,914
interest incomes	5,427,465
Total Incomes	29,436,449,442

(Source: ALIO:All Public Information In-One, ₩)

Fig. 1은 2017년 지원사업별 사업비와 주요 내용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비가 120억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예술인 파견지원이 77억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예술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18].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보면 전업예술인의 72.5% 이상이 ‘프리랜서’의 형식으로 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정규직은 6.4%에 불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19]. 그러므로 자유직업군이 절대 다수인 예술인들의 지원에 있어서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등의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증가가 더 요구되어 진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아닌 발전적인 재원마련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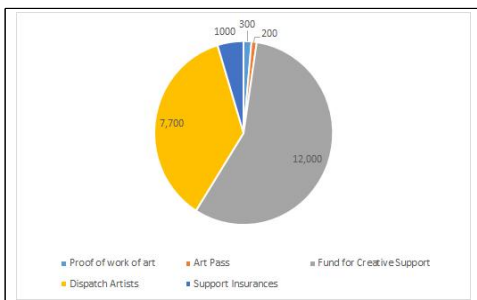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Business Expenses  
(Source: KAWF, ₩million)

#### 4. 결론 및 제언

문화예술의 발전과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은 필수적이다. 또한 오늘날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예술인을 위한 복지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20].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구현하고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은 4대 전략 방향성을 가지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지원, 산재보험 지원, 예술인 활동에 있어서 표준계약서 체결 방안 제시 등을 통해 예술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 공정한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권익신장을 위한 신문고 운영, 불공정계약관행 제거를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확대, 창작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한 예술인 심리상담 확대지원을 통해 공정한 예술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다[21].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재단은 창작의식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돕기 위해 여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예술활동증명, 예술인패스,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인 산재보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적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길버트와 타렐의 분석틀을 통해 볼 때 다양한 지원사업과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복지의 분배 차원에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

우선 할당의 대상으로서 예술인들이 복지대상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예술 활동에 대한 평가가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모든 분야에 객관적인 예술 활동이나 예술인으로서의 규정이 어렵다면 경력 등에 따라 예술인의 자격을 차등하여 현실감 있게 복지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급여의 형태에 있어서도 현금, 기회, 증서 등등 지원 사업에 따라 다양한 급여의 형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지급의 경우 지급의 규모와 시기,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간절히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현금 지급에 있어서 사후관리와 균등하게 지급이 되는지의 점검이 전무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각 사업별로 효율적 운영의 체계가 있으나 서비스 신청 및 접수 그리고 여러 운영의 단계에서 현실성이 없는 체계를 볼 수 있다. 예술인패스 사



업에서 형식적인 할인혜택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진정 필요로 하고 현실적으로 높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원금과 같은 현금지급의 체계는 보다 더 효율적인 급여의 제공을 위해 사업규모의 정확한 예산 선정 및 집행 요구되어 진다.

국고보조금에 거의 모든 재정을 의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보다 장기적이고 건실적인 재정확보의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예술인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와 그 규모는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다양한 측면의 수익이나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 사업에 운영에 있어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복지대상으로서의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술인의 활동, 지위, 경제적 상태를 자세하게 관리하는 시스템도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술인 공제회 설립 이라든지 예술인기금 등이 제안되기도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2018년 정부예산의 기금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예술인 창작권 보장을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및 본격적인 운영 준비하고 예술계 자부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해 총 1500억원 규모로 복지금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2,23]. 이는 일회성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예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보다 장기적인 재원확보의 방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들의 정규적인 고용의 형태를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의 수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사회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복지의 혜택을 배분하는 것을 넘어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여야 한다.

## REFERENCES

- [1] T. W. Kim & H. S. Jung. (2012). The Passing of the Welfare Law on Artists: Its Significance and Remaining Issues. *Forum for Welfare*, 1, 66-75.
- [2] H. S. Lee. (2014). Analysis of Operational Competency of Public Culture & Arts Institu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1), 23-32.  
DOI : 10.14400/JDC.2014.12.11.23
- [3] D. H. Cho. (2015). Basic research of effective cultural support systems-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e Gilbert and Terrell.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2(2), 253-270.
- [4] S. J. Yang. (2014). A Study on the Universal Welfare Policies in terms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3), 79-87.  
DOI : 10.14400/JDC.2014.12.3.79
- [5] J. K. Kim. (2011). The Welfare System for Cinéaste -Analysis of Legislative Dispute Issues of The Welfare Law(Bill) for Artists during the 18th National Assembly. *Film Study*, 48, 153-184.
- [6] UNESCO. (1980).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 147-155.
- [7]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2011). Article 1, 2.
- [8] KCTI. (2003-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Seoul: KCTI.
- [9] KCTI. (2003-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Seoul: KCTI.
- [10] KCTI. (2015-2018). *Information Book of Welfare by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Seoul: KAWF, MCST.
- [11] www.kawf.kr, Nov. 1. 2017.
- [12] KAWF. (2014-2018). *Directory Book of Artists Dispatch*. Seoul: KAWF
- [13] Y. J. Kang. (2017). *An Approach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Art Pass in KAWF*. Seoul: KAWF.
- [14] KAWF. (2014-2017). *The Study on Typical Cases of Artist Dispatch*. Seoul: KAWF
- [15] http://artpass.kawf.kr, Nov. 1. 2017.
- [16] Mir Yang. (2017). Munhwa News Homepage, http://www.munhwanews.com.
- [17] ALJO. (2017).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 [18] Management Information. (2017). Posted by KAWF, www.kawf.kr.
- [19] KCTI, (2015). *2015 Survey Report on Artists & Activities*. Seoul: KCTI.
- [20] J. K. Kang & J. Y. Lee. (2015). Status and Tasks of ICT-based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 67-76.  
DOI : 10.14400/JDC.2015.13.1.67
- [21] www.kawf.kr, Nov. 1. 2017.
- [22] B. H. Jang. (2017). Edaily Homepage, http://www.edaily.co.kr.
- [23] Y. H. Kim. (2008). *The need of establishment for consumer indemnity organization in funeral parlor industry*. Seoul: MCST.

정 지 영(Jiyoung Jung)

[정회원]



- 1995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 2002년 6월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작곡, 음악이론, 저작권, 문화행정
- E-Mail : jj0842@hansei.ac.kr

정 호 진(Hojin Jeong)

[정회원]



- 1992년 2월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현악과 졸업(학사)
- 1997년 6월 : Universität für Musik und darstellende Kunst in Wien (Magister)
- 2003년 3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관현악, 음악이론, 음악교육, 문화행정
- E-Mail : 2000081@hansei.ac.kr